

#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와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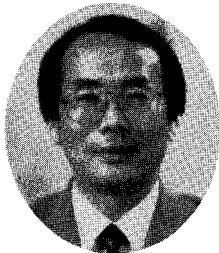
우리는 '90년대에 접어들어서 경제문제만 대두되면 악방의 감초처럼 으레히 환경규제 및 환경관리인 의무고용 완화문제를 거론해 왔다. 물론 그때마다 환경인 및 환경단체에서 부당성 논리를 펴서 몇몇 사안은 취소된바 있으나 실제로는 몇차례에 걸쳐 완화시켜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안이 나오기에 이르렀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실재적인 기여를 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I. 서 언

지난 10월 정부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정책의 일환이라는 전제하에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환경관리 전문대행업체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적 환경 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 사안은 방대한 정책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고 비단 환경관리인 뿐 아니라 몇몇 기술자격의 의무고용제도 폐지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혹자는 자못 그 중요성을 간과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빈번해지는 환경피해를 접하면서 또한 G.R, WTO 등 국가간 환





장준영

본연합회 4대회장

약방의 감초처럼 으레히 환경규제 및 환경관리인 의무 고용 완화문제를 거론해 왔다. 물론 그때마다 환경인 및 환경단체에서 부당성 논리를 펴서 몇몇 사안은 취소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몇차례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결국 상당 부분을 완화시켜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1·2종업체)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안이 나오기에 이르렀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기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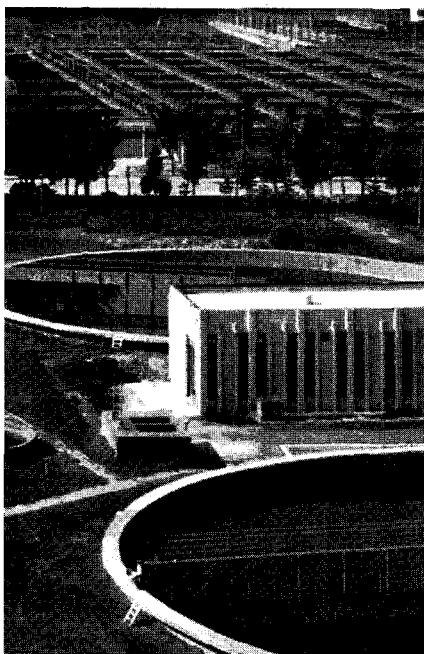
## II. 기업의 환경관리

많은 개선과 의식이 향상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의 환경관리비용은 기업이윤에 상반되는 소비성 경비쯤으로 여기는 기업주가 상당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탄강 오염사건에서도 보듯이 폐수의 무단방류로 관계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또다시 무단방류하여 적발된 사례를 보아도 비단 소수라 할지라도 그 의식과 현실이 어떠한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관점만으로 볼 때는 기업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도 가능한 축소하고 처리를 않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것이 부인하고 싶은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시설을 갖추고 가동하는 만큼 기업은 원가면에서 손해를 본다. 따라서 환경관리를 잘할수록 손해본다는 어느 기업주의 푸념도 이해가 된다. 또 어느 기업주는 「우리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설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즉 환경관리를 잘못하면 매스컴에 보도되고 그렇게되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되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할 수 밖에 없다는식의 논리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될 것이며 여기까지만 해도 국민 의식수준 향상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기업주의 의식은 국가환경보전과 지역생활 환경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등 다소 원대한 해석을 바라는 욕심이지만 어차피 기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속성때문에 유달리 환경문제해결은 환경규제를 할 수밖에 없으며 벌금, 부과금, 조업정지 등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95년도 환경부 중앙점검반의 지도점검결과('96 환경백서)를 보면 단속업소수에 대한 위반 업소수는 14.1%



◀ 지자체의 단속을 포함해 배출업소당 년간 2.6회 정도밖에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간은 기업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기업과 단속기관(환경부, 시, 도, 군, 구 등)과의 원충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환경관리인이라 할 수 있다.

로 아직까지 높은 위반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얼마전 본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체 오염 방지시설에 있어 업체수의 80% 이상이 노후 또는 부분적 교체가 필요하다는 실무자의 응답결과도 있었다.

지자체의 단속을 포함해 배출업소당 년간 2.6회 정도 밖에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간은 기업의 약심에 맡길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기업과 단속기관(환경부, 시, 도, 군, 구 등)과의 완충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환경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관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사명감과 약심을 가지고 기업의 오염방지에 관여하는자가 환경관리인인 것이다.

이제 기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아니,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좋다)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폭넓고 원대한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의 환경관리에 있어 폐수처리, 집진기관리 등의 업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원료절감(수율향상), 용수 절약, 재이용, 환경관리 기술축적, 공정개선, 폐기물관리 등의 광범위한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적게 배출하고

현재 우리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기술자들의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환경관리인들은 단순 기능공이 아니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환경관리인의 약 60% 이상이 대·소간에 타업무와 겹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회사의 실정과 포괄적인 환경관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상기하고 싶다.

### III. 환경관리인의 업무와 위치

환경관리인 제도는 기업의 오염저감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법적기준치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환경관리의 적정화를 사업장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효과로는 환경지도감독 관청의 인적, 물적, 규제 능력의 부족에 보충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과 역시 사

경쟁력을 높이자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환경기술이 선진국의 30%에 불과하다는 발표도 있었고 이미 중소기업의 의무고용은 비전문인 즉, 아무나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는데 환경기술 및 관리(원료투입에서 처리, 절감, 재이용 등의 포괄적 의미) 능력의 향상은 경쟁력 제고가 아닌 것인가?

가능하면 최대한 재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환경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능동적인 조치로서 국내외적인 환경보전 욕구에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쟁력을 높이자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환경기술이 선진국의 30%에 불과하다는 발표도 있었고 이미 중소기업의 의무고용은 비전문인 즉, 아무나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는데 환경기술 및 관리(원료투입에서 처리, 절감, 재이용 등의 포괄적 의미) 능력의 향상은 경쟁력 제고가 아닌 것인가?

업장의 자발적인 오염억제를 촉구한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관리인의 업무는 각종 환경행정 업무(법에 명시)는 물론 기술적 관리 및 20여개의 환경관련법에 해당하는 업무외에 이제는 방지시설가동(처리운전 등) 업무를 초월하여 원료투입 및 생산에 관련되는 공정관리, 재이용 등 그 업무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타업무와의 겹직까지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환경관리인은 법의 시행과정이나 업무의 특성상 기업과 관청의 중간 위치에서 기업에는 이윤에 반



↑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문자 그대로 참으로 바람직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관리 비용이 이윤추구에 상반된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환경관리인의 업무는 각종 환경행정 업무(법에 명시)는 물론 기술적 관리 및 20여개의 환경관련법에 해당하는 업무외에 이제는 방지시설가동(처리운전 등) 업무를 초월하여 원료투입 및 생산에 관련되는 공정관리, 재이용 등 그 업무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타업무와의 겹침까지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이 적지 않다.

하는 존재로 비춰지고 또한 관청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양면성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단점이 많지만) 위치에 있다.

따라서 어쩌면 기업에게는 미운오리새끼격이, 관청에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기업의 소속이므로)하는 위치에 있어 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문제발생 시에는 어쩔수 없이 법적책임을 짊어지는 등 애로가 상당하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일부 환경관리인중에는 이번의 의무고용제 폐지를 내심 바라는 자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

#### IV. 의무고용제 폐지후 예측되는 사항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문자 그대로 참으로 바람직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관리 비용이 이윤추구에 상반된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미 3·4·5종업체(중소기업)의 환경관리인 선임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상태에서 이 방안

의무고용제가 폐지된다면 기업의 환경문제에 관한 업무의 책임은 누가 감당해 낼 것인가? 기업의 환경업무를 3D업종으로 보고있는 현실에서 또 법적 책임때문에 비전문인은 더욱 더 환경업무의 담당을 회피할 것이고 결국 기업주는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의무고용제 폐지가 규제완화 측면의 일환이든 경쟁력 높이기 일환이든간에 이 사안을 기업에서 건의했고 또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면 이는 국내외적 현실과 환경영무의 특성을 모르고 제안한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의 시도는 가시적인 규제완화의 의미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어차피 기업의 환경관리업무는 최소한 비전문가라도 담당해야 할 것인데(전문인력을 없애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관청의 환경지도 단속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가 어렵고 이제는 지도·단속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고 할 것이며 결국은 환경기준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관청의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나 환경행정처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넷째, 국내외적 환경규제나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렵게 될 것이다.

다섯째, 불법적 오염사고나 처리 및 관리기술 부재에 따른 배출기준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결국 부과금, 벌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제가 폐지된다면 기업의 환경문제에 관한 업무의 책임은 누가 감당해 낼 것인가? 기업의 환경영무를 3D업종으로 보고있는 현실에서 또 법적 책임때문에 비전문인은 더욱 더 환경영무의 담당을 회피할 것이고 결국 기업주는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의무고용제 폐지가 규제완화 측면의 일환이든 경쟁력 높이기 일환이든간에 이 사안을 기업에서 건의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면 이는 국내외적 현실과 환경영무의 특성을 모르고 제안한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래서 서두에서와 같이 전문대행업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이 나왔는지 모르나 용역비를 받아 최대한 이윤추구를 하겠다는 전문대행업체의 운영체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문이다.

또 환경관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염방지시설의 운전만이 전부가 아니고 회사의 각 공정 즉, 원료투입에

서 생산과정의 관리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워질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다.

환경문제는 비켜갈 수 없다.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오히려 기업에서 환경경영의 자세(이미 그런 업체도 많아졌지만)로 기업운영을 영위함으로써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 V. 결 언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의 정부나 환경부의 고충과 노력을 이해가 되나 적어도 환경문제만큼은 근시안적인 대안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자못 지금의 조치가 추후에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국민적인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의 대두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이 경제에 예속되는식의 처방이 서슴없이 내려지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경제와 환경을 같은 선상에 놓고 정책을 개발하는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회생, 기업의 부담완화라는 미명아래 환경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 폐지」는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물론 경쟁력 높이기 즉 경제를 살리자는 의견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으나 경제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켜야 된다는식의 논조가 성립되는 등의 상황이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오히려 환경기술이나 환경보전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의 환경이 나날이 향상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풍요로운 삶의 질을 영위하는 국가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